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599호
2.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찬성자 30명)
3. 발의일자 : 2025년 03월 31일
4.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2일

II.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및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시 지방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는 제14조제3항(조례안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14조제4항(행정계획 통보)의 절차도 일부 미비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기존 조례에서는 중·장기 행정계획 통보 시점을 소관 위원회의 유무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행정 절차가 불명확하였고, 위원회가 시장의 통보 없이도 자체적으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안 및 행정계획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검토 및 시장의 반영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 통보 절차 신설
(안 제7조제1항).

나. 중·장기 행정계획 통보 시점을 ‘수립 또는 변경 전’으로 일원화
(안 제7조제3항)

다. 위원회의 자체 안전 검토 조항 삭제(기존 제7조제3항 삭제)

라. 조례 및 행정계획 검토 절차 및 기한 명확화(안 제7조제5항)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시장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됨.

2. 지속가능발전 법령의 변천 과정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이 세계 각국의 국정원리로 채택되고 세계 경제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그러나 2010년에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격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역할도 축소되었음.
- 이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021.9.4)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이라는 취지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다시 제정(2022.1.4)하였음.
- 동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되면서 삭제되었던 조례 위임사항들이 다시 규정되었음.

- 한편, 서울시는 법령의 변천과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가 폐지하였으나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이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 2017년 1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다시 제정하였음.
- 이후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재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주기를 변경하고¹⁾, 인용 조문과 용어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2022.12.30.)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동 법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임.

<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률 및 조례 주요 제·개정 내역 >

제·개정일자	주요내용
2007.08.03.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행계획 수립,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전략 수립 등 포함
2009.03.18.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 규정
2010.01.13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격하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 및 조례 위임조항 삭제
2011.07.28.	-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폐지 및 법률 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능이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로 통합
2013.05.16.	- 환경 중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17.01.05.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재제정
2021.09.0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2.01.04.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 - 지속가능발전을 환경 외에도 경제·사회 분야로 확장, 제도적 틀 재구성
2022.12.30.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
2025.03.31. (발의일자)	- 지방위원회의 통보·검토기한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조례 위임사항 반영

1) 5년 → 20년

3. 개정안의 검토

- 안 제7조는 동 조례 제7조의 제목을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으로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의 제·개정 시 지방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 또한 안 제10조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를 신설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해당 행정계획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또는 소관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지 않더라도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안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 또는 안건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 통보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이전에 서면으로 한다. ② 시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7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7. (현행 제6호와 같음)

-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위원회(해당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그 검토 내용의 반영 여부를 동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검토 대상, 방법, 통보 절차 등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시 지방위원회에 통보”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개정시 지방위원회에 통보” 하는 규정과 그 절차 및 방식이 누락되어 있음.

- 또한 현행 조례는 시장에게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임의로 안건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나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이었음.
-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합치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입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더욱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에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관련 조례 및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